

2025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경기도교육감

1. 지급인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2025년도 예산액: 840,000천원)

2. 명예퇴직신청

가. 신청기간

- 2025. 5. 14.(수) ~ 5. 20.(화) (명예퇴직 예정일 2025. 6. 30.)

나. 신청대상 [기본요건]

- 법인정관에 명예퇴직 관련 규정이 있고(2025년 상반기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 시행 공고일 이전),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근무 중인 사무직원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경기도의 재정결함지원 대상학교에 10년 이상 근무 중인 자로서,

①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② 사립학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며, 퇴직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

- (2)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명예 퇴직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됨을 유의

다. 신청절차

- (1)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붙임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자필), 「명예퇴직 대상자 요건심사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제출
- (2)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지·경영하는 사립학교 명예퇴직 희망자의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되, 관할 지역의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라. 선정기준

- (1) 지급대상자 우선순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① 과원발생 법인(유지경영학교)의 사무직원
- ② 상위 계급자
- ③ 재정결함 지원대상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은 자
-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많은 자
- ⑤ 당해 계급 장기재직자 순으로 선정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기준 직급”은 정관에서 정한 직급이 아닌 재정결함보조 인건비 지원 해당 직급으로 함.

(수당지원 금액 산정 : 지방공무원 산정 방법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

마. 대상자의 지급제한 [결격사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 ①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 결을 요구해야 하는 자,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 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③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④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⑤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기관의 사무직원으로 재임용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⑦ 명예퇴직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 ⑧ 기타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부적당하다 판단되는 자

3.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명예퇴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즉시 소속 학교법인을 경유 신청자에게 통지

4. 수당지급

-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어야 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

5. 수당 환수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며,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4 [별표 3]을 준용

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서 명시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 이 조항에서의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보며,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의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3에 따름)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학교기관의 교직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6. 관계법령 준용

○ 이 공고에 규정하지 아니한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함

7. 행정사항

가. 소속기관장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예퇴직원은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기관장이 이를 확인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사학재정담당 사립학교 명예퇴직담당자(☎ 031-249-0179)에 문의